# 재외동포기본법안 (전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82 발의연월일: 2020. 11. 3.

발 의 자:전해철·고영인·김남국

김종민 • 도종환 • 맹성규

이광재 · 이병훈 · 최인호

홍성국 의원(10인)

#### 제안이유

대통령 훈령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은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이를 추진·지원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정착 지원,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여 실질적인 정책 수립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 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외동 포정책위원회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을 체 계적·종합적·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 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 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 라.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점검 및 평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안 제11조).
- 마. 국가는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재외동포 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2조).

## 재외동포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재외동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2. "재외동포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 가.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지원 정 책
  - 나. 한인(韓人)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지원 정책
  - 다.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에 관한 정책
  - 라.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한 정책

- 마. 대한민국 방문 지원 및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권익신장 등에 관한 정책
- 제3조(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①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모 범적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 는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재외동포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등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및 대한민국 방문 지원 등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간 교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편의를 제공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위한지원을 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는 재외동포의 역량을 대한민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의 인적 자원 개발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국가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사업을 실시하여야한다.

-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5조(국제사회와의 조화) 국가는 국제법 및 조약을 준수하며 재외동 포 거주국의 정책 및 관할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외동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재외동포정책의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4. 그 밖에 재외동포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① 외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외교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③ 외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업무 협조) 외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외동포정책위원회) ①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 3. 재외동포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와 실무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재외공관의 역할)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12조(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① 국가는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수

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재외동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재외동포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실태조사)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① 재외동포와 대한민국간의 유대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한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한인주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세계한인주간을 기념하는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